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동승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419
----------	------

발의년월일 : 2016년 9월 26일

발 의 자 : 김동승·김용석(도봉)·이순자·최조웅
김문수·한명희·유 청·김용석(서초)
서윤기·최영수·문상모·김광수(노원)
김경자(강서)·최판술·문영민·박호근
이석주·박성숙·우미경·김진영·주찬식·
이성희·조상호·박준희 의원(24명)

1. 제안이유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근거 없이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계량기 시험 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이 부담하도록 하며,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의 일부를 조례에 직접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므로 위임할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

2. 주요골자

- 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의무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이상 여부 확인을 위한 시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며,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험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부담으로 함(안 제5조)
- 나.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례에 직접 규정함(안 제10조, 별표 4 신설)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수도법」, 「계량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관련부서 협의
- 다.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 2)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별첨)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업용 수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10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4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위임사무(제10조 관련)

1.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 가. 제3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
 - 나.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업무
 - 다. 제5조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 시험
 - 라. 제7조에 따른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업무
 - 마. 제9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적용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계량기의 고장) ① 공업용수 수요가 등은 계량기의 고장 또는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계량 오차는 다음번 사용료에서 정산한다.</p> <p>③ 제1항의 검정 수수료, 수리비용 및 계량기 대금은 수요가 등으로부터 실제비용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p> <p>제10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5조(계량기의 이상 시험) ① 공업용수 사용자 등은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p> <p>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계량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이미 조정한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 달분 요금에서 정산한다.</p> <p>③ 제1항에 따른 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공업용수 사용자 등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계량기에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시장의 부담으로 한다.</p> <p>제10조(사무위임)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4에 따라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p> <p>[별표 4]</p> <p>위임사무(제10조 관련)</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top: 5px;"> <p>1.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p> <p>가. 제3조에 따른 공사의 시행</p> <p>나. 제4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업무</p> <p>다. 제5조에 따른 계량기의 이상 시험</p> <p>라. 제7조에 따른 급수관 구경별기본요금 업무</p> <p>마. 제9조에 따른 다른 조례의 적용</p> </div>